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07

발의연월일: 2020. 11. 5.

발 의 자:윤영석·강기윤·이종배

박덕흠·김도읍·이채익

이철규·최형두·홍준표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 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 1.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
 - 2.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대학회계) ①・② (생	제11조(대학회계)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	③
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u>
	<u>국유재산 처분 수입금</u>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산관리) (생 략)	제26조(재산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
	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
	<u>할 수 있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
	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
	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
	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
 금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1.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
 2.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